

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.

Q 2022년 유기질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▶ 신청기간 및 장소

▶ 신청기간 2021. 11. 9. ~ 12. 8.

*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▶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

- 농지가 여러 시·군·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·군·구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
○ 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
○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**이장, 공급희망농협, 자목반장** 등을 통해 관할 읍·면·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▶ 공급시기 2022. 1월 말 ~ 12월 말

*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희망시기(월)에 배송

▶ 신청자격

▶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
-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
▶ 지원대상 [비료의 종류]

▶ 유기질비료(3종) 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

▶ 부숙유기질비료(2종) 가축분퇴비·퇴비

▶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,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▶ 제출서류

-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,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 비치

▶ 신청서 참고사항 [미사용비료 제거]

-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 물량으로 간주되어, 이후 사용희망시에는 읍·면·동에 재배정 받으셔야 합니다.
- 최초 10~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 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(재배정 놓기 포함) 익년도 사업자는 시 공급획정 물량이 축소 지원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유기질비료 (20kg/포)	특등급	1등급	2등급	가축분퇴비·퇴비(20kg/포)	1,500원	1,300원
보조금 (전현사업 보전금, 자방비 포함)	1,600원	1,600원	1,600원				
자부담	8,000원 ↓	4,000원 ↓	3,600원 ↓	3,300원 ↓	3,300원 경우	2,400원 2,100원 2,000원	2,000원

* 보조금은 1,300원~1,600원 / 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, 비중별, 등급별로 다를 수 있음. 원로명 및 원로투입비율을 꼭 확인하세요.

▶ 기타 참고사항

- *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**농지소재지 읍·면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나 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**

◦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 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.

